

용역계약서

(프로젝트)

발주자 (일을 맡기는 쪽)

상호 · 성명 :

사업자번호 · 생년월일 :

주소 :

수행자 (일을 하는 쪽)

성명 · 상호 :

주소 :

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발주자가 수행자에게 위탁하는 (용역명)(이하 "본 용역"이라 한다)의 수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역의 범위)

① 수행자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

2.

3. 산출물:

4.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:

② 위 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,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3 조 (계약기간)

①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② 발주자의 자료 제공이나 승인이 지연되어 수행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, 그 지연 기간만큼 수행기간을 연장하되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한다.

제 4 조 (대금 및 지급방법)

① 본 용역의 대금은 금 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은 금

원이다.

- ② 발주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7 일 이내에 선금 금 원(총액의 %)을 지급한다.
- ③ 발주자는 산출물의 인도 및 검수 완료일부터 15 일 이내에 잔금 금 원을 수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.
- ④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, 수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
제 5 조 (산출물의 인도 · 검수 및 수정)

- ① 수행자는 () 방법으로 산출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.
- ② 발주자는 인도일부터 7 일 이내에 검수하고 그 결과를 수행자에게 통지한다.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- ③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수행자는 2 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정한다. 그 횟수를 넘는 수정이나 확정된 방향을 되돌리는 수정은 별도로 협의하여 추가 대금을 정한다.

제 6 조 (저작권의 귀속)

- ①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가 대금을 전액 지급한 때 수행자로부터 발주자에게 양도된다.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저작재산권은 수행자에게 있다.
- ② 수행자가 본 용역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도구·라이브러리·템플릿 등에 대한 권리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, 수행자는 발주자가 산출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다.
- ③ 산출물에 제 3 자의 저작물(폰트·이미지·음원·오픈소스 등)이 포함된 경우, 그 이용 조건은 해당 제 3 자가 정한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른다.
- ④ 저작인격권(성명표시권·동일성유지권 등)은 저작자에게 일신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2 차적저작물 및 수정 권한)

- ① 발주자는 산출물을 자신의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산출물을 이용하여 2 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의 범위와 조건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산출물이 수정된 경우 수행자는 자신의 성명 표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.

제 8 조 (비밀유지)

- ① 양 당사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며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·기술·인사·고객 정보 등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공지된 사실,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,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 3 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, 법령이나 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.

- ③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24 개월간 존속한다.

제 9 조 (대금 지급의 지연)

- ① 발주자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,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%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② 대금의 지급이 30 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행자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 용역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, 그 중단 기간은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업무 범위의 변경)

- ① 제 2 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의 추가·변경은 서면(전자우편·메신저를 포함한다)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.
- ②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금과 기간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위 합의 없이 요청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계약의 해지 및 정산)

- ①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,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발주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발주자는 해지일까지 수행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.
- ③ 해지 시 수행자는 그때까지 완성된 산출물과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인도한다.

제 12 조 (실적 공개 · 포트폴리오)

- ① 수행자는 본 용역의 산출물과 발주자의 상호를 자신의 포트폴리오·홍보 자료에 실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.
- ② 다만 발주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와 아직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산출물은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공개한다.

제 13 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먼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 14 조 (기타)

-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, 발주자와 수행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발주자 : (인)

수행자 : (인)